

2005. 8. .

其他案件審查報告書

- 충주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도시계획시설)변경결정안
의견제시의 건

産業建設委員會

기타안건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| 안 건 명 | 제안일자 | 회부일자 | 상정일자 | 의결일자 | 제안설명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충주시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도시계획 시설)변경결정안 의 견제시의건 | 2005. 8. 23 | 2005. 8. 23 | 2005. 8. 29 | 2005. 8. 29 | 지역개발 과 장 |

2. 제안설명요지

- 충주시의 장래 묘지수요를 예측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공동묘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평면적으로 확산되어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현재의 묘지형태를 유형화 규격화하며 기당 점유면적을 가능한 축소, 집단배치하여 각처에 산재하는 묘지의 난립을 억제하고
- 공동묘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묘지를 공원화하고, 공간을 아름답게 미화, 정비함으로써 경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동묘지시설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도시계획의 개요

- 위치 : 충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 43-13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관리지역
- 시설명 : 재단법인 진달래 동산 공동묘지 조성사업
- 사업시행자 : 재단법인 진달래 동산 대표이사 김선교
- 면적 : 954,634m²(288,776평)
- 사업기간 : 2005년 ~ 2010년 12월
- 총사업비 : 164억원
- 개발방법 : 민간개발

○ 주요 결정(변경) 내용

- 용도지역변경 : 관리지역, 농림지역 ⇒ 계획관리지역
- 도시계획시설결정(묘지시설 : 공동묘지) : 954,634m²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양성면 본평리 산43-13번지에 위치하는 진달래 동산은 1982년 6월 25일 충청북도로부터 「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25,614m²의 면적에 대하여 사설묘지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603,752m²에 대하여 묘지 조성이 완료 되었고

-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묘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36조,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- 금번 시설결정 면적은 954,634m²로써 당초면적 925,615 m²보다 29,019m²가 늘게 되나 이는 진달래동산 구역 내 매입하지 못했던 10,330m²의 사유지를 매입하고, 이미 묘지(인근 주민들의 공동묘지)로 조성된 사유지 18,689 m²를 시설내로 편입하여 결정하는 것임
- 금번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
- 본 안건은 관련실과 협의와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관련 법규와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결정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를 공원화하여 경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
- 다만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묘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 및

주차장, 녹지, 공원시설 등의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임

- 또한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39조 내지 제141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성된 묘지가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음

5. 질의답변 요지

▶ 질의 : 집중호우 등 장마를 대비 무너져 내리는 곳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이 중요

○답변 :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

▶ 질의 : 충주에 마련한 혐오시설인데 충주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

○답변 : 적극 검토하겠음

6. 심사결과 : 의견서 채택

7. 불 임 : 의견서 1부

의견서

□ 의안명 : 충주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변경결정안

□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제600호
- 상정일자 : 2005년 8월 23일
- 의결일자 : 2005년 8월 29일
-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, 제36조, 제43조

□ 의견

- 진달래 동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를 공원화하여 경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
- 다만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묘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 및 주차장, 녹지, 공원 시설 등의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임
- 또한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39조 내지 제141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성된 묘지가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음

2005. 8. 29

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